

#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

## 1. 2003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

(단위 : 천원)

| 회계별  | 제1회 추경예산액   | 기정예산액       | 증(△)감     | 증감률(%) | 비 고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계    | 111,758,748 | 102,591,926 | 9,166,822 | 8.94   |     |
| 일반회계 | 108,326,114 | 100,953,776 | 7,372,338 | 7.30   |     |
| 특별회계 | 3,432,634   | 1,638,150   | 1,794,484 | 109.54 |     |

## 2.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

### 가. 예산안의 규모

(단위 : 천원)

| 예산액       | 기정예산액     | 증(△)감  | 증감률(%) | 비 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
| 1,334,156 | 1,258,078 | 76,078 | 9.4    |     |

### 나. 증감된 세항·세세항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| 제1회 추경예산액 | 기정예산액     | 증(△)감  | 비 고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합 계  | 1,334,156 | 2,258,078 | 76.078 |     |
| 의사운영 | 977,236   | 901,158   | 76.078 |     |
| 의정활동 | 356,920   | 356,920   |        |     |

## 3. 검토의견

지방자치법 제121조 제①항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고,

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

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정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.

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 5,807만 8천원 대비 7,607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3,41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.

증액된 7,607만 8천원의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 3,837만 8천원으로 인건비 상승과 총 정원이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증원되었고 경상적 경비인 복리후생비 2,996만원 및 업무추진비 774만원으로 편성된 추경요건에 부합된 필수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.